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6

발의연월일: 2020. 6. 11.

발 의 자:서삼석・이용선・윤후덕

김정호 · 송갑석 · 장경태

조오섭 · 이개호 · 박 정

이병훈 · 이해식 · 김승남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등의 세제지원을 통하여 농축수산업 관련 주택취득,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 조합법인 등 농축수산업자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지원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를 202 0년 12월 31일까지 두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확산 장기화,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농축수산물 소비 급감, 쌀값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등으로 농축수산업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들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지원 등과 관련된 조세특례제도가 당분 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축수산업의 생활안정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제69조의3제1항, 제71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2020년"을 "2025년"으로 한다.

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2020년"을 "2025년"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을 "2025년"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을 "2025년"으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을 "2025년"으로 한다.

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을 "202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21년"을 각각 "2026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22년"을 "2027년"으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2020년"을 "2025년"으로, "2021년"을 각각 "2026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2년"을 "2027년"으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2020년"을 각각 "2025년"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0년"을 "2025년"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0년"을 각각 "2025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	소득세의 감면) ①		
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			
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u>2020년</u> 12월 31일까지 양도함	<u>2025년</u>		
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			
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			
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			
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			
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			
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④ (생 략)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 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2020년 12월 31일까 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 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 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 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 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 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 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u>2025년</u>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③ (생 략)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 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 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 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 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 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 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 합법인에 혀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 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 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

	③ (현 (영농지	달음)] 증여	겨반는
		' 증여세:	
			7 1
면)	(<u>I</u>)	 	
		 _	

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 3. (생 략)

② ~ ⑧ (생 략)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세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 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 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 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 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 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 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 한다)의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 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 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 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이 20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세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 과세특례) ①
2025년
<u> 2023 t. </u>

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 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 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 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 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 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 8. (생략)

② ~ ⑥ (생 략)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 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세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2025년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지 대한 과세특례)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 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 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 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회 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 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0 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 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 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 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 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

1. ~ 3. (현행과 같음)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u>2025년</u>

-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1. <u>2021년</u> 1월 1일부터 <u>2021년</u>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 2. <u>2022년</u>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 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 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 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 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 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 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 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 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 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

 1. <u>2026년</u> <u>2026년</u>
 2. <u>2027년</u>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u>2025년</u>
<u> 2026년</u> <u>2026년</u>

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 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2022년 1월 1일 이후 조합 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 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 제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한다)중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한다)을취

② <u>2027년</u>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서	취득자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서	취득자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서	취득자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서	취득자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서	취득자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서 ①	취득자

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 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 (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 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 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 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 1. 2. (생략)
- ② ~ ④ (생 략)
- ⑤ 1세대가 수도권 내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양도하는 시점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만을소유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기간내에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는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제7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2025년

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 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받 을 수 있다.

- ⑥ ~ ⑧ (생 략)
-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경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1. ~ 6. (생략)
 - ② (생략)
-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

⑥ ~ ⑧ (현행과 같	승)	
제105조(부가가치세 영	세율의	적
<u>a</u>) ①		
	<u>2025</u> 4	<u>년</u>
1. ~ 6. (현행과 같음	<u>5</u> .)	
. — - , — ,	<i>⊒)</i>	
② (현행과 같음)	⊷l 1	L \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능)
1		
	9	2025
	<u> </u>	.520

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 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다.

- 1. ~ 12.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이 경우 제9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0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0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0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다.
- 1. ~ 20. (생략)
- ③ ~ ⑤ (생 략)

<u>년</u>
1. ~ 12. (현행과 같음)
②
<u>2025년</u>
1. ~ 20.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